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1호
----------	--------

발의년월일 : 2023년 2월 2일  
발 의 자 : 이수옥 의원  
찬 성 자 : 임정옥, 임옥연,  
최혜숙, 황민철,  
오해정, 정택진 의원  
(6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 및 인원을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예고 : 2023. 2. 3. ~ 2023. 2.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새롭게 모집·선정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 ① 구청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기 선정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수는 목동신시가지1단지 아파트 5명, 목동한신청구 아파트 5명으로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 ⑦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 3. (생략)

3. (생략)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831호 관련
----------	--------------

2023년 2월 일  
복지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위원의 수를 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인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2항).

첨부 : 1.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새롭게 모집·선정한”을  
“공개모집이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투명하고 공정  
한 방법으로 선정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선정된”을 “구성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목동신시가지1단지 아파트 5명, 목동한신청구 아파트 5명으  
로”를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수는 목동신시가지1단지 아파트 5명, 목동한신청구 아파트 5명으로 한다.

② -----  
-----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  
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  
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